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09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이인선·정동만·강선영

고동진 · 임이자 · 박수영

박충권 · 성일종 · 박상웅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 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통관 대리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다목 및 바목 중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각각 "도매업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을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u>중소기업</u>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u>기업</u> 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u><삭 제></u>
가. 작물재배업	
<u>나. 축산업</u>	
<u>다. 어업</u>	
<u>라. 광업</u>	
<u>마. 제조업</u>	
바. 하수 폐기물 처리(재활	

<u>용을 포함한다)</u>,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u>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u><u>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u>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u>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u> 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 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

 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사업
- <u>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u> 관리업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

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 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 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u>노. 「노인복지법」에 따른</u> <u>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u> <u>사업</u>
-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 른 전시산업
-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 함한다)
- <u>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u> <u>비스업</u>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

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 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 는 사업

-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 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 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 조제1호나목의 산업
-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 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 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u>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u> <u>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u> <u>관리업</u>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

스업

-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 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 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 정한다)
- 2. 감면 비율. 다만, <u>제1호무목</u> 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 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생 략)

2	<u>통관</u>	대리	및	관련
<u>서비스업</u>				
		·		
가. (현행]과 같	음)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u>제1호</u> 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 마. (생략)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
 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생략)
- ② ~ ⑤ (생 략)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 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

나 <u>도매업등</u>
 다 <u>도매업등</u>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 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 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 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 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 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 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 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 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 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분할 · 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 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